

학교법인 만경학원 이사회 회의록 (2016년도 제 4회)

1. 일 시 : 2016년 7월 15일 16시

회의소집통보일시

2016. 7. 4

2. 장 소 : 만경고등학교내 법인실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6명

3. 참석이사 : 6명 (이사장 남궁숙

이 사 최문호, 박영창, 이상우, 박달심, 박종배)

4. 불참이사 : 0명

5. 안 건 : 가. 2016학년도 제2회 만경중 학교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나. 2016학년도 제2회 만경고 학교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다. 법인 임원 선임 취소의 건

라. 법인 임원(일반이사 및 개방이사) 선임의 건

마. 교원 정년의 건

바. 대우사무직원 임명의 건

사. 기간제교사 면직의 건

아. 기간제교사 임용의 건

회 의 전 말

간사(고행정실장) : 이사정원 8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사장 개회 선언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4회 만경학원 이사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회의록 낭독 인준

간 사 : 2016년도 제3회 이사회 안건인 2015학년도 법인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2015학년도 만경중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2015학년도 만경고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2016학년도 제1회 만경중 학교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6학년도 제1회 만경고 학교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2016년 4월 26일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제2회 만경중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 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먼저 세입의 이전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10,990,000원이 증액되어 1,005,476,000원이 되며, 자체수입 중 학부모부담수입 1,050,000원이 감액되어 37,399,000원, 행정활동수입 5,000원이 증액되어 395,000원이며, 세출에서는 인적자원운용 200,000원이 증액되어 813,364,000원,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3,169,000원이 증액하여 41,826,000원, 기본적교육활동 472,000원이 증액하여 29,773,000원, 교육활동지원 7,099,000원이 증액하여 74,597,000원, 학교일반운영비 995,000원이 감액하여 91,279,000원으로 세입세출 각각 9,945,000원이 증액된 1,069,73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 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간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예산안에 별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박영창 : 동의에 재청합니다.

최문호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6학년도 만경중학교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세출 각각 9,945,000원이 증액된 1,060,739,000원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2016학년도 제2회 만경고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 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먼저 세입의 이전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은 141,788,000원이 증액되어 1,909,303,000원이 되며, 자체수입 중 학부모부담수입 6,417,000원이 증액되어 501,855,000원, 행정활동수입 167,000원이 증액되어 1,757,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에서는 인적자원운용 31,420,000원이 증액되어 1,497,446,000원,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93,530,000원이 증액하여 536,916,000원, 기본적교육활동 12,261,000원이 감액하여 96,118,000원, 선택적교육활동 32,141,000원이 증액된 89,959,000원, 교육활동지원 6,017,000원이 증액하여 76,462,000원, 학교일반운영비 2,475,000원이 감액하여 139,008,000원으로 세입세출 각각 148,372,000원이 증액된 2,436,90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 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학생수련활동경비가 크게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 사 : 일단 1학년 신입생 수가 입학 정원에 미치지 못해 전년에 비해 적고 1인당 수련활동 경비가 많지 않아 많은 금액이 금번 추경에서 감액 처리 되었습니다.

박종배 : 간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예산안에 별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최문호 : 동의에 재청합니다.

박달심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6학년도 만경고등학교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세출 각각 148,372,000원이 증액된 2,436,909,000원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법인 이사 선임 취소의 건

의 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본 법인의 개방이사인 '이주철' 이사 및 일반이사 '김견수' 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2016년 제1회 법인이사회에서 2016년 2월 2일자로 해임 의결되었고 2016년 제2회 법인이사회에서 2016년 2월 23일자로 일반이사 '유준희' 와 개방이사 '지현식' 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임으로 선임된 '지현식' 씨는 일신상의 사유로 2016년 5월 31일자로 사임하였으며, '유준희' 씨는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이사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져 2016년 6월 3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회의에서 '유준희' 및 '지현식' 의 선임을 취소하고 일반이사 및 개방이사를 재선임해야 합니다.

의 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달심 : 이미 선임을 했는데 본 회의에서 선임을 취소하고 다시 후임을 선임하는 것에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간 사 :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은 했으나 전북교육청에 임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두 분의 이사직은 실효성이 없어 본 법인 이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금번 회의에서 이사 선임을 취소하고 후임을 다시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창 : 이미 이사로 선임한 후에 사임의사를 밝혀 유감스럽지만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니 법인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속한 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준희' 및 '지현식' 의 이사 선임을 취소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영창 : 동의에 재청합니다.

박종배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6년 제2회 법인이사회(2016. 2. 23)에서 일반이사로 선임된 '유준희' 및 개방이사로 선임된 '지현식' 의 이사 선임을 취소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법인 이사 선임의 건

의 장 :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앞서 안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법인의 개방이사인 '이주철' 이사 및 일반이사 '김견수' 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게 되어 2016년 제1회 법인이사회에서 2016년 2월 2일자로 해임 의결되어 현재 임원 2명이 결원이며, 개방 이사는 2018년

7월 24일, 일반 이사 2018년 7월 30일이 임기만료일입니다. 또한 일반이사인 '이상우' 이사의 임기가 2016년 7월 27일자로 만료되어 후임을 선임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4조 및 만경학원 정관 제24조 3항에 의거 결원중인 개방이사 1명, 일반이사 1명과 임기만료된 일반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하며 교육경력자인 '김견수' 이사의 사임으로 3인 중 1명은 교육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원 보충으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전라북도교육청 법인 임원승인일로부터 결원 중인 해당이사의 잔여 임기만료일까지입니다.

【개방 이사 선임의 건】

의 장 : 먼저 개방이사 후임의 선정에 대해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앞서 설명드린대로 '이주철' 개방이사의 후임은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 및 본 법
인 정관 제22조 3항과 제24조의 1에 의거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후임을 선정해야 합니다.

의 장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개방이사 후임자에 대해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2016년 2월 2일자로 해임된 '이주철' 이사 후임으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인
의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먼저 1981.9.18. ~ 2015.8.31까지 본 법인 교사 및 교장
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하신 '오준상' 과 송실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학원을 다년간 경영하고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유재권' 이 후보자로 추천되었
으니 이사님들은 추천후보자들 중 1인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의 학력
및 경력 등은 기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 여러 이사님들은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창 : 두분 모두 학교 및 학원 등 두루 교육경험이 있지만 보다 젊은 분이 법인이사를 역
임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주철' 이사 후임으로 '유
재권' 씨를 추천합니다.

의 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배 : 박영창 이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달심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상우 : 이의 없습니다(전원찬동)

의 장 : 참석이사 전원찬동으로 2016년 2월 2일자로 해임된 '이주철' 개방이사 후임으로
'유재권' 이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이주철' 이사의 잔여임기로 전북교육청 승인
일로부터 2018년 7월 24일까지임을 선포합니다.

【일반 이사 선임의 건】

- 김견수 이사 후임 -

의 장 : 먼저 2016년 2월 2일자로 해임된 '김견수' 일반이사 후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라
며 사립학교법 제21조 3항에 의거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분으로 후보자를 추

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심 :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이사 후보자는 우석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무풍중·고등학교 및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기간제 교사로 다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으로 교육경력도 충족하고 학력인정학교이긴 하지만 현직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중등교육 및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이 높고 본 법인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잘 협조하고 기여하실 것으로 사료되는 분으로 '김견수' 이사 후임으로 '김은정' 씨를 추천합니다.

의 장 : 또 다른 추천자 있으십니까?

이상우 : 박달심 이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영창 : 동의에 재청합니다.

최문호 : 이의 없습니다(전원찬동)

의 장 : 참석이사 전원찬동으로 2016년 2월 2일자로 해임된 '김견수' 일반이사 후임으로 '김은정' 씨가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김견수' 이사의 잔여임기로 전북교육청 승인일로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임을 선포합니다.

- 이상우 이사 후임-

의 장 :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먼저 본 법인 이사로 재임 중인 '이상우' 이사의 임기가 2016년 7월 2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0조 1항 및 만경학원 정관 제23조 1항, 제24조 2항 및 4항에 의거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의 장 : 먼저 해당자인 이상우 이사님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이사 회의장에서 퇴장)

의 장 : 이상우 이사 후임으로 적합한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호 : 그 동안 이상우 이사는 30년 이상을 전북경찰청에 근무하면서 경정으로 정년퇴임하기까지 전북지역 발전에 공헌하신 분으로, 2012년 7월부터 본 법인 이사로 재임하시면서 법인 및 학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점 등 책임자로 사료되는 바, 후임으로 이상우 이사를 재선임했으면 합니다.

의 장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종배 : 최문호 이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영창 : 동의에 재청합니다.

박달심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6년 7월 27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상우' 이사 후임으로 '이상우' 이사가 재선임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우이사 입장하여 수락 인사)

◆교원 정년의 건

의 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본 법인을 유지·경영하는 만경고등학교 영어과 교사 '이세형' 이 8월말로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만경고등학교 교사 '이세형' 은 1954년 6월 11일 생으로 1980년 11월 27일부터 36여년간 본 법인에 재직하였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및 본 법인 정관 제50조의 3항의 교원 정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6년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 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 교육공무원법 및 본 법인 정관에 의거한 정년퇴직이므로 2016년 8월 31일자로 면직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박달심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상우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만경고등학교 교사 '이세형' 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및 본 법인 정관 제50조의 3항의 정년퇴직 규정에 의거 2016년 8월 31일자 정년퇴직으로 면직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대우사무직원 임명의 건

의 장 :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제33조의 2, 만경학원 정관 제85조의 2에 의거 일반직 8급 대우의 경우 총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일반직 9급 당해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대우사무직원 임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만경고등학교의 일반직 9급 사무직원 '김선경' 은 2011년 5월 1일자로 최초 임용되어 2016년 10월 1일 기준 총 근무경력 5년 이상 및 당해계급 경력적용기간 5년이 되어 대우사무직원 선발 요건을 충족하여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2013.12.12) 및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14035(2013.12.09)의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직렬별로 일반직내 신설 직렬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하고, 종전 기능직 정원은 전환 임용되어 직렬의 정원으로 승계됨에 따라 2014년 3월 1일자로 대우공무원 선발 대상자인 만경고 '김선경' 은 기능직 9급에서 일반직 9급(시설관리)으로 직군이 전환되었는 바, 일반직 9급 대우사무직원 대상자입니다.

의 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창 : 사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해당자가 결격사유 없이 선발요건을 충족하니 일반직 8급 대우사무직원으로 선발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우 : 동의에 재청합니다.

최문호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제33조의 2, 만경학원 정관 제85조의 2항의 대우공무원 선발 규정에 의거 현 만경고등학교 소속 일반직 9급 '김

선경'은 2016년 10월 1일자로 일반직 8급 대우사무직원으로 선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간제교사 면직의 건

의 장 : 간사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2016년 1학기 교과 편성과정에 의거 2016년 3월 1일자로 임용한 만경중학교 체육과 정원외 기간제교사 '박현상'의 계약기간이 2016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면직하게 됩니다.

이상우 :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면직하는 것이므로 만경중학교 체육과 기간제교사 '박현상'을 2016년 8월 31일자로 면직하는데 동의합니다.

최문호 : 동의에 재청합니다.

박종배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만경중학교 체육과 기간제교사 '박현상'은 계약기간 만료로 2015년 8월 31일자로 면직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기간제교사 임용의 건

의 장 : 간사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먼저 만경고등학교 영어과 교사 1명이 2016년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함에 따라 2016학년도 2학기(6개월)에 영어교사 1명의 결원이 발생합니다. 전북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15. 12)에 의거하여 영어교과는 전북교육청의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재된 자를 우선 임용하고 응시기간에 인력풀 등재자가 없거나 지원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로 일반 전형자의 임용이 가능합니다. 만경고등학교 영어과 기간제교사 선발 결과 '김명선'이 최종 합격하였으며, 2학기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임용기간은 2016년 8월 16일 ~ 2017년 2월 15일까지 6개월입니다.

또한 만경중학교 2학기 체육과 정원외 기간제교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2016년 8월 31일자로 면직하게 되어 김제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를 한 결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학기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15. 12)의 인력풀전형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만경중학교 체육교과 기간제교원은 인력풀등재자 임용과목으로 단절기간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한 자로 임용 현재 전북교육청 인력풀 등재자로 확인 될 경우 재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6학년도 2학기(2016.9.1. ~ 2017.2.28.)에도 임용대상자 '박현상'이 근무기간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본인 또한 재계약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여 별도로 공고를 하지 않고 재임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추후 김제교육지원청의 정원외 기간제교원 배정이 취소되거나 임용에 따른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 없이 임용을 취소하는 단서 조항을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인적사항은 기재포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창 : 2016학년도 학사운영에 필요한 인원으로 모집공고를 통하여 최종 선발되어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만경고 영어과 기간제교사 '김명선' 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여 제청하였으므로 학교장이 제청한 원안대로 임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만경중학교의 정원외 기간제교원 '박현상' 도 학교장의 제청에 의거하여 임용하되 추후 김제교육지원청의 정원외 기간제교원 배정 및 임용에 따른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임용을 취소하는 단서 조항을 붙이는데 동의합니다.

박달심 : 동의에 재청합니다.

최문호 : 이의 없습니다.(참석이사 전원찬동)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6학년도 2학기 만경고 정원내 기간제교사로 영어과 '김명선' 은 2016년 8월 16일 ~ 2017년 2월 15일까지 임용하게 되며, 만경중학교 2학기 정원외 기간제교사 체육과 '박현상' 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임용하게 됩니다. 다만, 만경중학교 체육과 기간제교원의 경우 추후 김제교육지원청의 정원외 기간제교사 배정 취소 및 임용 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 의결없이 임용을 취소하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여 임용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위 회의의 전말을 기록하고 사실과 틀림없음을 인정 이에 서명 날인함.

2016년 7월 15일 11시 50분

이 사장 남궁속 (인) 남궁속

이 사 최문호 (인) 최문호

이 사 박영창 (인) 박영창

이 사 이상우 (인) 이상우

이 사 박종배 (인) 박종배

이 사 박달심 (인) 박달심

본대조팔	
인	이사장
	